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서정초등학교

내 용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정초등학교에서는 구령대 리모델링 공사(21,780,000원)를 실시하면서 [표1] “구령대 리모델링 공사 정산내역” 과 같이 공사 완료 시 도급자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구령대 리모델링 공사 정산내역

구분	준공내역(A)	수정내역(B)	증감액(B-A)	
재료비	7,353,834	7,353,834	-	
노무비	6,623,992	6,623,992	-	
경비	산재보험료	245,088	245,088	-
	고용보험료	57,629	57,62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9,550		△409,550
	기타경비	782,758	782,758	-
	운반비	1,680,000	1,680,000	-
	소계	<b>3,175,025</b>	<b>2,765,475</b>	△409,550
	일반관리비	1,029,171	1,004,598	△24,573
이윤	1,624,228	1,559,110	△65,118	
공급가액	19,806,250	19,307,008	△499,241	
부가세	1,980,625	1,930,701	△49,924	
도급액	<b>21,786,870</b> (원단위절사)	<b>21,237,700</b> (원단위절사)	<b>△549,170</b>	

## 2. 고용·산업재해보험료 미계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의2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서정초등학교에서는 ‘놀이터 인조잔디 매트 공사’를 실시하면서 산출내역서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료를 계상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3. 하자보수 보증금(서) 보증기간 설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정초등학교에서는 ‘놀이터 인조잔디 매트 공사’를 실시하면서 하자보수 보증서 보증기간의 시작일을 준공검사일(2021. 11. 15.)이 아닌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일(2021. 11. 12.)로부터 기간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① 서정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서정초등학교

내 용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9842, 2021.6.15.)」에 따르면 물품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비슷한 3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구매 평가를 위해 업체명, 브랜드명, 모델명 등 평가위원들이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하고 블라인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의 경우 물품선정위원회 실시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정초등학교는 조합놀이대(19,877,000원) 구매를 위해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 하면서 2개의 업체만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비교표 및 평가표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선정위원에게 제공하였으며, 물품선정위원회 실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교실용 책걸상(46,053,000원) 구매와 칠판(27,010,000원) 구매를 위한 물품선정위원회를 실시한 후에도 각각의 실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① 서정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